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. 29 선고 2020가단1433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9.

주 문

1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6. 3.자 증여계약은 5,686,4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686,4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

판사조미옥

별지